

1.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1명 증원하는 내용 등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44호, 2026. 5. 12.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제분석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경제분석국 및 4개 과·담당관을 신설하고 인력 13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4명, 4급 또는 5급 5명, 5급 58명, 6급 44명, 7급 22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에 불공정행위 사건과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개 과를 신설하고 인력 70명(5급 1명, 6급 26명, 7급 17명, 8급 13명, 9급 13명)을 증원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건의 중점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관리관 밑에 한시조직으로 기획단을 신설하고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9명, 6급 13명, 7급 5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 공포, 2026. 10.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증원(별표 2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 1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을

증원함.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부조직 신설과 인력 증원 등(별표 2 등)

- 1) 사무처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경제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분석국 및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6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함.
- 2) 조사관리관 밑에 조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4급 1명, 5급 5명, 6급 3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전자적 증거의 체계적 수집·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6급 4명, 7급 4명)을 증원함.
- 3) 시장감시국에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디지털산업 분야 위반행위 관련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6명, 7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서비스업 분야 및 제조업 분야에서의 독과점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5급 9명, 6급 5명) 및 신속한 약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각

각 증원함.

4) 카르텔조사국에 건설·에너지 분야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5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입찰 및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5급 4명, 6급 4명)을 증원함.

5) 기업집단감시국에 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7명, 7급 6명),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인력 증원에 따른 원활한 인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비위행위 감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상임위원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9급 1명)을 각각 증원함.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신설과 인력 증원(별표 3 등)
불공정행위 사건과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인력 10명(6급 3명, 7급 1명, 8급 3명, 9급 3명),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인력 16명(6급 6명, 7급 4명, 8급 3명,

9급 3명),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인력 16명(6급 5명, 7급 3명, 8급 4명, 9급 4명),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인력 14명(6급 6명, 7급 4명, 8급 2명, 9급 2명) 및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인력 6명(6급 3명, 7급 3명)을 각각 증원함.

라. 공정거래위원회 한시조직 신설(제21조 및 별표 7)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건의 중점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관리관 밑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9명, 6급 13명, 7급 5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함.

마. 총액인건비제의 활용(부칙 제3조 등)

1) 공정거래위원회에 특수거래 분야의 조사, 건설 분야 불공정하도급 조사, 시장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특수거래감시팀, 건설하도급조사팀 및 시장분석팀을 신설하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및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속한 민원 검토 및 사전심사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사전심사팀을 각각 신설함.

2)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중점조사팀 및 표시광고감시팀을 각각 폐지함.

3)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조정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소속기관의 정원(5급 5명)을 기존의 직급으로 조정(6급 5명)하며, 총액인

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9월 30일까지 소속기관의 정원(5급 1명)
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함.

바. 임기제공무원 임용 확대(제17조제3항 등)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원
중 106명(5급 48명, 6급 54명, 7급 4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6. 11. ~ 6.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안전(이하 “제1상임위원담당안전”이라 한다)”을 “안전”으로, “안전에”를 “안전(이하 “제1상임위원담당안전”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중 “제1호의 안전”을 각각 “제1상임위원담당안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1상임위원담당안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안전에”를 “안전(이하 “제2상임위원담당안전”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의 안전”을 “제2상임위원담당안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제2상임위원담당안전”을 “제3상임위원담당안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상임위원담당안전”을 “제3상임위원담당안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제3상임위원담당안전”을 “제4상임위원담당안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상임위원담당안전”을 “제4상임위원담당안전”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중 “조사총괄담당관·경제분석담당관·디지털포렌식담당관 및 중점조사팀”을 “조사총괄담당관·조사교육담당관·디지털포렌

식담당관”으로, “서기관으로, 중점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분석담당관”을 “조사교육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1.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기법·규정·제도 등에 관한 교육·훈련
(이하 ‘조사 관련 교육·훈련’이라 한다) 계획의 수립
2. 조사 관련 대내외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조사
3. 조사 관련 대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조사 관련 대내외 교육·훈련 교재 및 콘텐츠의 제작·관리

제7조제4항제27호 중 “규제개혁사항”을 “규제합리화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7항제7호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서비스업감시과·제조업감시과·지식산업감시과·약관특수거래과·전자거래감시과 및 표시광고감시팀을 두며, 서비스업감시과장·제조업감시과장·약관특수거래과장·전자거래감시과장”을 “서비스업감시과·제조업감시과·지식산업감시과·표시광고감시과·약관심사과·전자거래감시과 및 특수거래감시팀을 두며, 서비스업감시과장·제조업감시과장·표시광고감시과장·약관심사과장·전자거래감시과장”으로, “표시광고감시팀장”을 “특수거래감시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9항, 제8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표시광고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
·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표시·광고에 관한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공개 및 임시중지명령
제의 운용

제11조제9항(중전의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약관특수거래과장”을 “특수거래감시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시광고감시팀장”을 “약관심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심사·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3.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금융 관련 약관 또는 표준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제12조제2항 중 “제조카르텔조사과·입찰담합조사과·국제카르텔조사과 및 서비스카르텔조사과”를 “제조카르텔조사과·입찰담합조사과·국제카르텔조사과·서비스카르텔조사과 및 건설에너지카르텔조사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건설에너지카르텔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에너지 분야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건설·에너지 분야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와 관리
3. 건설·에너지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와 시정

제12조의2제4항제4호 중 “공시률”을 “공시 및 대기업집단·지주회사 관련 정보분석률”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하도급조사과·기술유통조사과·신산업하도급조사과·기업결합과·국제기업결합과·가맹거래조사과·유통거래조사과 및 대리점거래조사과를”을 “제조하도급조사과·기술유통조사과·신산업하도급조사과·기업결합과·국제기업결합과·가맹거래조사과·유통거래조사과·대리점거래조사과 및 건설하도급조사팀을”로, “서기관으로”를 “서기관으로, 건설하도급조사팀장은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도급조사과장”을 “제조하도급조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제조·건설·유통 및 수리”를 각각 “제조·수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건설하도급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용역(제7항에 따른 신산업 분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위탁 관련 조사 계획의 수립·시행
2. 건설·용역 위탁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종합 및 관리
3. 건설·용역 위탁 조사 기법의 개발
4. 건설·용역 위탁에 대한 부당감액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건설·용역 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의 운영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경제분석국) ① 경제분석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경제분석국에 산업경제분석과·계량경제분석과 및 시장분석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시장분석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산업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소관 사건 등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 관리·조정
2. 위원회 소관 사건(단독행위·기업결합) 등에 대한 경제분석
3. 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4. 경제분석 기법의 수집·개발 및 전파
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계량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소관 사건(공동행위·부당지원·소비자) 등에 대한 경제분석
2. 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3. 데이터 기반 설문·실험 설계 및 분석
4. 시장 및 소비자 관련 빅데이터 수집·분석·관리
5. 데이터 기반 경제분석 방법론 및 계량 기법의 개발 및 전파

⑤ 시장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소관 사건(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에 대한 경제분석
2. 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3. 국내외 주요 산업·시장 연구
4. 위원회 소관 법령·제도 관련 경제분석
5. 위원회 소관 사건처리 사후분석 및 평가
6. 신산업·민생 관련 시장조사 및 분석

제14조제2항 본문 중 “총괄과·경쟁과·소비자과·건설하도급과·제조하도급과 및 가맹유통팀”을 “총괄과·경쟁과·소비자과·건설하도급과·제조하도급과·가맹유통팀 및 사전심사팀”으로, “경쟁과장·소비자과장·건설하도급과장·제조하도급과장 및 가맹유통팀장”을 “경쟁과장·소비자과장·건설하도급과장·제조하도급과장·가맹유통팀장 및 사전심사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사전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관 상담·질의·민원 등의 접수·처리
2.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관 상담·질의·민원 등 관련 조사개시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제14조의2제2항 본문 중 “총괄과·가맹유통소비자과·건설하도급과 및 제조하도급과를”을 “총괄과·가맹유통소비자과·건설하도급과·제조하도급과 및 사전심사팀을”로, “가맹유통소비자과장·건설하도급과장 및 제조하도급과장”을 “가맹유통소비자과장·건설하도급과장·제조하도급과장 및 사전심사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사전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관 상담·질의·민원 등의 접수·처리
2.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관 상담·질의·민원 등 관련 조사개시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제15조제2항 본문 중 “부산·광주·대전”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경쟁과·소비자과·건설하도급과 및 제조하도급과를 두고, 광주·대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도급과장”을 “광주·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하도급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건설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용역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시행

2. 건설·용역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관리
3. 건설·용역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건설·용역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

⑧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제조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시행
2. 제조·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관리
3. 제조·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제조·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

제17조제3항 중 “21명(6급 9명, 7급 12명)”을 “29명(6급 13명, 7급 16명)”으로, “20명”을 “112명”으로, “10명, 6급 1명”을 “58명, 6급 4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7명)과”를 “7명),”으로, “1명)”을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6명(6급 6명)”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중점조사기획단) ① 중점조사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중점조사기획단장 밑에 중점조사1담당관·중점조사2담당관 및 중점조사3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중점조사1담당관·중점조사2담당관 및 중점조사3담당관은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중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관하여 중점조사기획단장을 보좌한다.

④ 중점조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1의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란 중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북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599”를 “735”로, 일반직 계 “596”을 “732”로, 고위공무원단 “13”을 “14”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3”을 “4”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8”을 “42”로 하고,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2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52”를 신설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52 다음에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92”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92 다음에 “행정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사서주사·운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06”를 신설하며, 행정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사서주사·운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06 다음에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사서

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77”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77 다음에 “행정서기·전산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사서서기 또는 운전서기 17”를 신설하며, 행정서기·전산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사서서기 또는 운전서기 17 다음에 “행정서기보·전산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사서서기보·운전서기보 또는 사무운영서기보 11”를 신설한다.

별표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47”을 삭제하고,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34”를 삭제하며, “행정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사서주사·운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62”를 삭제하고,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시설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55”를 삭제하며, “행정서기·전산서기·시설서기·사서서기 또는 운전서기 17”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전산서기보·시설서기보·사서서기보·운전서기보 또는 사무운영서기보 10”를 삭제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599”를 “735”로, 일반직 계 “596”을 “732”로, 고위공무원단 “13”을 “14”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3”을 “4”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8”을 “42”로 하고,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2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52”를 신설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52 다음에 “행정사무관·전산사

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94”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94 다음에 “행정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사서주사·운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04”를 신설하며, 행정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사서주사·운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04 다음에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77”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77 다음에 “행정서기·전산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사서서기 또는 운전서기 17”를 신설하며, 행정서기·전산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사서서기 또는 운전서기 17 다음에 “행정서기보·전산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사서서기보·운전서기보 또는 사무운영서기보 11”를 신설한다.

별표 2의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47”을 삭제하고,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41”를 삭제하며, “행정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사서주사·운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55”를 삭제하고,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시설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55”를 삭제하며, “행정서기·전산서기·시설서기·사서서기 또는 운전서기 16”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전산서기보·시설서기보·사서서기보·운전서기보 또는 사무운영서기보 11”를 삭제한다.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를 신설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14”를 각각 “284”로 하고,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6”를 신설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6 다음에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43”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43 다음에 “행정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사서주사·운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02”를 신설하며, 행정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사서주사·운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02 다음에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73”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73 다음에 “행정서기·전산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사서서기 또는 운전서기 27”를 신설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6”를 삭제한다.

별표 3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42”를 삭제하고, “행정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사서주사·운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76”를 삭제하며,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시설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56”를 삭제하고, “행정서기·전산서기·시설서기·사서서기 또는 운전서기 14”를 삭제하며, 행정서기

· 전산서기 · 시설서기 · 공업서기 · 사서서기 또는 운전서기 27 다음에 “행정서기보 · 전산서기보 · 시설서기보 · 공업서기보 · 사서서기보 · 운전서기보 또는 사무운영서기보 26”를 신설하고, “행정서기보 · 전산서기보 · 시설서기보 · 사서서기보 · 운전서기보 또는 사무운영서기보 13”를 삭제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14”를 각각 “284”로 하고,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 다음에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7”를 신설하며,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7 다음에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43”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43 다음에 “행정주사 · 전산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사서주사 · 운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01”를 신설하며, 행정주사 · 전산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사서주사 · 운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01 다음에 “행정주사보 · 전산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73”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 전산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73 다음에 “행정서기 · 전산서기 · 시설서기 · 공업서기 · 사서서기 또는 운전서기 27”를 신설하며,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6”를 삭제한다.

별표 3의2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43”을 삭제하고, “행정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사서주사·운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75”를 삭제하며,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시설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56”를 삭제하고, “행정서기·전산서기·시설서기·사서서기 또는 운전서기 13”를 삭제하며, 행정서기·전산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사서서기 또는 운전서기 27 다음에 “행정서기보·전산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사서서기보·운전서기보 또는 사무운영서기보 26”를 신설하고, “행정서기보·전산서기보·시설서기보·사서서기보·운전서기보 또는 사무운영서기보 14”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조직	정원	평가기간
조사관리관	1명 (고위공무원단 가급 1명)	2028년 3월 31일까지
심판관리관 카르텔심판담당관	10명 (4급 1명, 5급 5명, 6급 2명, 7급 2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조사관리관 디지털포렌식담당관	10명 (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조사관리관 조사교육담당관	11명 (4급 1명, 5급 5명, 6급 3명, 7급 2명)	2029년 3년 31일까지
시장감시국 전자거래감시과	4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시장감시국	6명	2029년 3년 31일까지

표시광고감시과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카르텔조사국 건설에너지카르텔조사과	14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5명, 7급 2명)	2029년 3년 31일까지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가맹유통심의관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대리점거래조사과	12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4명, 7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신산업하도급조사과	8명 (5급 5명, 6급 2명, 7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제분석국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2029년 3년 31일까지
경제분석국 계량경제분석과	10명 (4급 1명, 5급 6명, 6급 1명, 7급 2명)	2029년 3년 31일까지

별표 4 제1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업무	정원	평가기간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경제분석	1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1명, 6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경제분석	4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디지털산업 분야 불공정행위 관련 조사업무	16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6명, 7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2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2호의 표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을 신설한다.

총리령 제164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총리령 제170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총리령 제1940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총리령 제2104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표시광고감시팀 및 기업집단정보분석팀”을 “기업집단정보분석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표시광고감시팀장 및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을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으로, “표시광고감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서비스업 분야의 사항은 서비스업감시과장이, 제조업 분야의 사항은 제조업감시과장이 각각 분장하고,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을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의2, 별표 1, 별표 2의3,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정거래위원회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2에도 불구하고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2의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특수거래감시팀, 건설하도급조사팀, 시장분석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전심사팀 및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전심사팀은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특수거래감시팀장, 건설하도급조사팀장, 시장분석팀장,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전심사팀장 및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전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특수거래감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약관심사과장이, 건설하도급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제조하도급조사과장이, 시장감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업경제분석과장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전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이,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전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소비자과장이 분장한다.

제4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은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으로 본다.

[별표 2의3]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601
정무직 계	2
위원장(장관급)	1
부위원장(차관급)	1
별정직 계	1
비서(6급 상당)	1
일반직 계	598
고위공무원단	1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2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8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47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34
행정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사서주사·운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62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55
행정서기·전산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사서서기 또는 운전서기	17
행정서기보·전산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사서서기보·운전서기보 또는 사무운영서기보	11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사진 및 영상 촬영·편집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속기 담당)	1
전문경력관 다군(속기 담당)	2

[별표 2의4]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601
정무직 계	2
위원장(장관급)	1
부위원장(차관급)	1
별정직 계	1
비서(6급 상당)	1
일반직 계	598
고위공무원단	1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2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8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47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36
행정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사서주사·운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60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55
행정서기·전산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사서서기 또는 운전서기	17
행정서기보·전산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사서서기보·운전서기보 또는 사무운영서기보	11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사진 및 영상 촬영·편집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속기 담당)	1
전문경력관 다군(속기 담당)	2

[별표 7]

공정거래위원회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4항 관련)

1. 중점조사기획단(존속기한: 2028년 9월 30일)

총계	33
일반직 계	33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9
행정주사 · 전산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사서주사 · 운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3
행정주사보 · 전산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심판관리관) ① ~ ③ (생략)	제6조(심판관리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경쟁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④ ----- -----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u>안건(이하 “제1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u> 중 같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을 제외한 <u>안건</u> 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1. ----- ----- <u>안건</u> ----- ----- ----- ----- <u>안건(이하 “제1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u> 에 -----
2. <u>제1호의 안건</u> 에 대한 쟁점의 정리 등 심의절차의 준비	2. <u>제1상임위원담당안건</u> ----- -----
3. <u>제1호의 안건</u> 심사보고서 첨부 자료의 열람·복사 등에 관한 사항	3. <u>제1상임위원담당안건</u> ----- ----- -----
4. <u>제1호의 안건</u> 관련 의결서의 작성	4. <u>제1상임위원담당안건</u> ----- --
5. <u>제1호의 안건</u> 관련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와 재결서의 작성	5. <u>제1상임위원담당안건</u> ----- -----
6. <u>제1호의 안건</u> 관련 심결사례와 판례 등의 수집·분석과	6. <u>제1상임위원담당안건</u> ----- -----

심결사례집의 발간	-----
7. <u>제1호의 안건</u> 관련 사전심사 청구의 검토	7. <u>제1상임위원담당안건</u> ----- -----
8. <u>제1호의 안건</u> 관련 회의록의 작성	8. <u>제1상임위원담당안건</u> ----- --
⑤ 카르텔심판담당관은 다음 사 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 한다.	⑤ ----- ----- ---
1. <u>제1상임위원담당안건</u>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제 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u>안건</u> 에 대한 심사보고서 의 검토	1. 「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 제40조제1항 --- ----- ----- -- <u>안건(이하 “제2상임위원담 당안건”이라 한다)에</u> ----- -----
2. <u>제1호의 안건</u> 에 대한 제4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u>제2상임위원담당안건</u> ----- -----
⑥ 기업거래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 좌한다.	⑥ ----- -----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	1. ----- ----- ----- ----- -----

련 안건(이하 “제2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2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제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⑦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3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3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제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⑧ (생략) 제6조의3(조사관리관) ① (생략) ② 조사관리관 밑에 조사총괄담당	----- “제3상임위원담당안건”----- ----- 2. 제3상임위원담당안건----- ----- ----- ⑦ ----- ----- -----. 1. ----- ----- ----- ----- ----- ----- “제4상임위원담당안건”----- ----- ----- 2. 제4상임위원담당안건----- ----- ----- ⑧ (현행과 같음) 제6조의3(조사관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조사총괄담당
---	---

당관 · 경제분석담당관 · 디지털 포렌식담당관 및 중점조사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중점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조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1. ~ 3. (생략)

4.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기법 · 규정 등에 관한 교육 · 훈련

5. ~ 9. (생략)

④ 경제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소관 사건 등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

2. 경쟁제한적 법령 · 관행 및 제도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

3. 국내외 주요 산업 · 시장의 경제분석

관 · 조사교육담당관 · 디지털포렌식담당관-----

-- 서기관-----

③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 9. (현행과 같음)

④ 조사교육담당관-----

--.

1.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기법 · 규정 · 제도 등에 관한 교육 · 훈련(이하 ‘조사 관련 교육 · 훈련’이라 한다) 계획의 수립

2. 조사 관련 대내외 교육 · 훈련에 대한 수요조사

3. 조사 관련 대내외 교육 ·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u>4. 품목별 독과점 요인의 경제 분석과 제도개선 대안 검토</u>	<u>4. 조사 관련 대내외 교육·훈련 교재 및 콘텐츠의 제작·관리</u>
<u>5. 위원회 소관 법령 및 고시·지침 등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시 경제분석과 평가</u>	<u><삭 제></u>
<u>6. 경쟁 관련 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u>	<u><삭 제></u>
<u>7. 경쟁 관련 경제분석 기법의 수집·개발 및 전파</u>	<u><삭 제></u>
<u>8. 주요 산업·제도 등의 경쟁 관련 경제분석을 위한 실태조사</u>	<u><삭 제></u>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u>⑥ 중점조사팀장은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u>	<u><삭 제></u>
제7조(기획조정관) ① ~ ③ (생 략)	제7조(기획조정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 ----- -----.

1. ~ 25. (생략)	1. ~ 25. (현행과 같음)
26. 삭제	
27. 위원회 소관 <u>규제개혁사항</u> 의 발굴과 총괄·조정	27. ----- <u>규제합리화사항</u> -----
28. (생략)	28. (현행과 같음)
29. 자체 <u>규제개혁위원회</u> 의 운영	29. --- <u>규제합리화위원회</u> ----
	--
30. ~ 32. (생략)	30. ~ 32. (현행과 같음)
⑤ 삭제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9조(경쟁정책국) ① ~ ⑥ (생략)	제9조(경쟁정책국)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규제개혁위원회</u> 상정 안건의 검토	7. <u>규제합리화위원회</u> ----- --
8. (생략)	8. (현행과 같음)
⑧ ~ ⑫ (생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제11조(시장감시국) ① (생략)	제11조(시장감시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감시국에 <u>서비스업감시과·제조업감시과·지식산업감시과·약관특수거래과·전자거래감시과</u> 및 <u>표시광고감시팀</u> 을 두며, 서비스업감시과장·제조	② ----- <u>서비스업감시과·제조업감시과·지식산업감시과·표시광고감시과·약관심사과·전자거래감시과</u> 및 <u>특수거래감시팀</u> 을 두며, 서비스업감

업감시과장·약관특수거래과장·전자거래감시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식산업감시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표시광고감시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략)

<신설>

⑥ 약관특수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심사·시정 조치 및 이행 확인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3.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시과장·제조업감시과장·표시광고감시과장·약관심사과장·전자거래감시과장-----

----- 특수거래감시팀장-----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표시광고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표시·광고에 관한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공개 및 임시중지명령제의 운용

⑨ 특수거래감시팀장-----
-----.

<삭제>

<삭제>

<삭제>

금융 관련 약관 또는 표준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4. ~ 8. (생략)

9. (생략)

⑦ (생략)

⑧ 표시광고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표시·광고에 관한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공개 및 임시
중지명령제의 운용

<신설>

제12조(카르텔조사국) ① (생략)

② 카르텔조사국에 제조카르텔조사과·입찰담합조사과·국제
카르텔조사과 및 서비스카르텔
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⑥ (생략)

1. ~ 5. (현행 제4호부터 제8호
까지와 같음)

6. (현행 제9호와 같음)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⑦ 약관심사과장-----
-----.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심사·
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심사자문위
원회의 운영

3.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금융 관련 약관 또는 표준약관
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제12조(카르텔조사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조카르텔조
사과·입찰담합조사과·국제카
르텔조사과·서비스카르텔조사
과 및 건설에너지카르텔조사과
-----.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기업집단감시국) ① ~

③ (생 략)

④ 공시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 행위 중 공시를 통해 인지한 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6. (생 략)

⑤ ~ ⑦ (생 략)

⑦ 건설에너지카르텔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에너지 분야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건설·에너지 분야 사업자간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와 관리

3. 건설·에너지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와 시정

제12조의2(기업집단감시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3. (현행과 같음)

4. -----

----- 공시 및 대기업집단·지주회사 관련 정보분석을 -----

5.·6.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기업거래결합심사국) ①
~ ③ (생략)

④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하도급조사과 · 기술유통조사과 · 신산업하도급조사과 · 기업결합과 · 국제기업결합과 · 가맹거래조사과 · 유통거래조사과 및 대리점거래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하도급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 · 건설 · 용역 및 수리 위탁 관련 조사 계획의 수립 · 시행
2. 제조 · 건설 · 용역 및 수리 위탁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 · 종합 및 관리
3. 제조 · 건설 · 용역 및 수리 위탁 조사 기법의 개발
4. 제조 · 건설 · 용역 및 수리 위탁에 대한 부담감액 등

제13조(기업거래결합심사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조하도급조사과 · 기술유통조사과 · 신산업하도급조사과 · 기업결합과 · 국제기업결합과 · 가맹거래조사과 · 유통거래조사과 · 대리점거래조사과 및 건설하도급조사팀을 -----
--- 서기관으로, 건설하도급조사팀장은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

⑤ 제조하도급조사과장-----
-----.

1. 제조 · 수리 -----

2. 제조 · 수리 -----

3. 제조 · 수리 -----

4. 제조 · 수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제조·건설·용역 및 수리
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 센터의 운영

6. ~ 8. (생략)

⑥ ~ ⑫ (생략)

<신설>

--

5. 제조·수리 -----

6. ~ 8. (현행과 같음)

⑥ ~ ⑫ (현행과 같음)

⑬ 건설하도급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용역(제7항에 따른 산업 분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위탁 관련 조사 계획의 수립·시행

2. 건설·용역 위탁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종합 및 관리

3. 건설·용역 위탁 조사 기법의 개발

4. 건설·용역 위탁에 대한 부당감액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건설·용역 분야 불공정 하

<신 설>

도급거래 신고센터의 운영

제13조의2(경제분석국) ① 경제분석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경제분석국에 산업경제분석과·계량경제분석과 및 시장분석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시장분석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산업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소관 사건 등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 관리·조정
2. 위원회 소관 사건(단독행위·기업결합) 등에 대한 경제분석
3. 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4. 경제분석 기법의 수집·개발 및 전파
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계량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소관 사건(공동행위 · 부당지원 · 소비자) 등에 대한 경제분석
2. 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 분석 · 관리
3. 데이터 기반 설문 · 실험 설계 및 분석
4. 시장 및 소비자 관련 빅데이터 수집 · 분석 · 관리
5. 데이터 기반 경제분석 방법론 및 계량 기법의 개발 및 전파

⑤ 시장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소관 사건(하도급 · 가맹 · 유통 · 대리점) 등에 대한 경제분석
2. 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 분석 · 관리
3. 국내외 주요 산업 · 시장 연구
4. 위원회 소관 법령 · 제도 관련 경제분석
5. 위원회 소관 사건처리 사후

제14조(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 (생략)

②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 · 경쟁과 · 소비자과 · 건설하도급과 · 제조하도급과 및 가맹유통팀을 두되, 총괄과장은 서기관으로, 경쟁과장 · 소비자과장 · 건설하도급과장 · 제조하도급과장 및 가맹유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총괄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 · 운영하는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 ⑧ (생략)

<신 설>

분석 및 평가

6. 신산업 · 민생 관련 시장조사

및 분석

제14조(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2) -----

총괄과 · 경쟁과 · 소비자과 · 건

설하도급과 · 제조하도급과 · 가

맹유통팀 및 사전심사팀-----

----- 경쟁과장 · 소비자과

장 · 건설하도급과장 · 제조하도

급과장 · 가맹유통팀장 및 사전

심사팀장-----

----- . -----

--.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 사전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관 상담·질의·민원 등의 접

제14조의2(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 (생략)

②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가맹유통소비자과·건설하도급과 및 제조하도급과를 두되, 총괄과장은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가맹유통소비자과장·건설하도급과장 및 제조하도급과장은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가맹유통소비자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신설>

수·처리

2.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관 상담·질의·민원 등 관련 조사개시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제14조의2(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총괄과·가맹유통소비자과·건설하도급과·제조하도급과 및 사전심사팀을 -----

-- 가맹유통소비자과장·건설하도급과장·제조하도급과장 및 사전심사팀장-----

-----.

-----.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사전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부산·광주·대전 및 대구 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 (생략)

② 부산·광주·대전 및 대구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총괄과·경쟁과·소비자과 및 하도급과를 두되, 각 과장은 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략)

⑥ 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신설>

1.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관 상담·질의·민원 등의 접수·처리

2.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관 상담·질의·민원 등 관련 조사개시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제15조(부산·광주·대전 및 대구 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경쟁과·소비자과·건설하도급과 및 제조하도급과를 두고, 광주·대전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광주·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하도급과장-----
-----.

1. ~ 4. (현행과 같음)

⑦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건설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신 설>

분장한다.

1. 건설·용역 위탁 분야 하도
급거래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
· 시행

2. 건설·용역 위탁 분야 하도
급거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관리

3. 건설·용역 위탁 분야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
행 확인

4. 건설·용역 위탁 분야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
홍보

⑧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제조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수리 위탁 분야 하도
급거래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
· 시행

2. 제조·수리 위탁 분야 하도
급거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관리

3. 제조·수리 위탁 분야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제17조(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

③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경제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6명(5급 6명),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1명(6급 9명, 7급 12명), 기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9급 2명)과 그 밖의 정원 중 20명(3급 또는 4급 5명, 4급 2명, 5급 10명, 6급 1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소비자 관련 법

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제조·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

제17조(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29명(6급 13명, 7급 16명)-----

----- 112명-----
----- 58명, 6급 45명-----
-----.

④ (현행과 같음)

⑤ -----

령 소관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7명(8급 7명)과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 설>

----- 7명), -----
-----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6명(6급 6명)-
---.

제21조(중점조사기획단) ① 중점 조사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중점조사기획단장 밑에 중점조사1담당관·중점조사2담당관 및 중점조사3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중점조사1담당관·중점조사2담당관 및 중점조사3담당관은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중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조사,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관하여 중점조사기획단장을 보좌한다.

④ 중점조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총리령 제1643호 공정거래위원회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하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행정서기보 1명 및 별표 3의2의
행정서기보 1명은 각각 2027년
9월 9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9월 1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
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행정서
기 1명 및 별표 3의2의 행정서
기 1명으로 본다.

총리령 제1703호 공정거래위원회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
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 5명)은 20
28년 5월 27일까지 존속하며, 2
028년 5월 28일 이후에는 그에

총리령 제1643호 공정거래위원회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부칙

<삭 제>

총리령 제1703호 공정거래위원회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
칙

<삭 제>

<u>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행정주사 5명으로 본다.</u>	
총리령 제1940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총리령 제1940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u>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중점조사팀은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중점조사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중점조사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조사총괄담당관이 보좌한다.</u>	<u><삭 제></u>
총리령 제2104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총리령 제2104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u>표시광고감시팀 및 기업집단정보분석팀</u>은 2029년 3월 24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u>표시광고감시팀장 및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u>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u>표시광고감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서비스업 분야의 사항은 서비스업감시과장이, 제조업 분야의 사항은 제조업감시과장이 각각 분장하고,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업집단관리과장이 분장한다.</u>	구의 존속기한) ① ----- ----- ----- ----- <u>기업집단정보분석팀</u> ----- ----- -----. ② ----- <u>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u>----- ----- ----- ----- <u>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u>----- ----- ----- ----- ----- -----.
--	---